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37 | 2026.6.22 (2026.6.15 ~ 2026.6.21)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국방부>는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군사시설 규제개선은 군이 선제적으로 미래 작전환경에 부합하도록 민간인통제선을 조정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접경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이정표를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6~’30)**」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과 투명한 시장 질서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준의 부동산서비스 시장 구현’을 향후 5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3가지 추진 전략과 11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재정경제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비축물자 무상공급 절차 및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비협조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의 복합적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성토지 수의계약 대상 및 지역기업 우대 범위를 확대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공간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징수된 과징금·가산금·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2차 피해 예방 지원,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이라도 그 모회사 또는 자회사 역시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식보유기준을 30% 이상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배제하고 원칙인 50% 이상이 적용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2개연도 이상 계속하여 PBR이 1 미만인 기업에 대해 자본구조와 자금조달비용 등을 스스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 계획을 기재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명확화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2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가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회사의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게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2인)」,

국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0인)」,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통합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최민희의원 등 13인)」,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에 대한 훼손, 위작 또는 변작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를 지원하고 그 훼손, 위작 또는 변작을 방지할 조치 의무를 각각 부여하는 등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3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해 대기업 등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단체협상권’을 갖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결혼중개 거짓·과장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혼중개업자의 중개계약 체결 관련 준수 의무, 결혼중개업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 등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 발표(국방부) 6
-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국토교통부) 7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재정경제부) 8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산업통상부) 8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농림축산식품부) 9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양수산부) 9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9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10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정경제부) 11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부) 11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12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2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2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14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1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15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16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2인) 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17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2인) 1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1인) 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의원 등 10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0인)	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21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21
•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최민희의원 등 13인)	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3인)	2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23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23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24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의원 등 10인)	24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25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25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8인)	26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26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27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27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2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3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건설/부동산] 도시정비사업 뉴스레터 6월호
- [조세] Tax Intelligence 6월호
- [공정거래] 공정위, 신고인 절차적 권리 강화 -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내용 및 시사점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6. 3. - 2026. 6. 16.)
- [방송통신(TMT)]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 분리 보관·관리 조치 시행 시기 단축에 따른 유의사항 -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 발표 -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군 전투임무에 집중하기 위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이정표 마련 - 민통선 조정, 제한보호구역 최적화, 주민불편 해소 추진	2026-06-17
-----	---	------------

국방부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병역자원 감소 및 무기체계 발전 등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힘

그간 국방부는 영농, 안보관광, 개발 등 지역사회의 요구에 사안별로 대응해왔다면, 이번 군사시설 규제개선은 군이 선제적으로 미래 작전환경에 부합하도록 민간인통제선을 조정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접경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이정표를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군이 군사작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작전수행여건을 보장하는 가운데 민간인통제선 조정

- 지역별로 지형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km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약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
-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와 CCTV 설치 등의 통제수단을 보완하여 '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
- 민통선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국방예산을 투입하겠으며, 민통선의 효율적인 설치·유지·운영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업

② 필요최소 원칙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최적화

- 군사기지 및 시설별로 필요한 보호거리를 검토하고, 최신 무기체계 등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하여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했으며, 그 결과 약 여의도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통해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
- 다만 민통선 조정과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지도상에서 판단한 수치로, 실제 지형측량과 작전부대별 검토과정에서 변동 가능하며, 향후 작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③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 적극 해소

- 개별 군사장애물의 작전적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장애물은 과감히 철거
- 인터넷 및 모바일 앱 기반의 출입신청을 통해 민통선 출입절차를 간소화 및 표준화하고 간편 인증을 통해 신원확인 및 출입조치 시간을 최소화하는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
- 접경지역 민간드론 비행통제를 위한 필수적인 통제요소 외에는 주민편의를 위해 승인·인가 절차를 간소화
- 지방정부로부터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군 유휴지의 정보(위치, 규모 등)를 접수받고, 요건에 맞는 부지를 식별하여 지방정부가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

국토교통부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

- 부동산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시장 투명성 제고 위한 향후 5년 정책방향 제시

2026-06-18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6~’30)」을 수립했다고 밝힘. 이번 계획은 혁신과 신뢰를 두 축으로,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과 투명한 시장 질서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준의 부동산서비스 시장 구현’을 향후 5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3가지 추진 전략과 11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했음

비전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과 투명한 시장질서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준의 부동산서비스 시장 구현

전략

혁신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부동산 산업 부가가치 극대화

#프롭테크 #AI #디지털 전환 #데이터

전통 부동산 산업의 체질 개선 및 서비스 고도화

#전문성 #신뢰 #증개 #평가 #개발 #리츠 #분양대행

신뢰

안심

소비자 중심의 편리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소비자 편의 향상 #소비자 피해 예방 #시장 거래 질서

중점과제

프롭테크 신산업
혁신·성장 지원

- ①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
 - 제도기반 구축
 - 데이터 거래시장 조성
 - 지능형 플랫폼 구현 등
- ② 신산업 혁신주체 발굴, 육성
 - 우수사업자 선정제 도입
 - 혁신 아이디어 발굴
- ③ 프롭테크 기업 창업, 경영 지원
 - 창업 및 스케일업 지원
 - 해외 진출 지원
 - 정책 사각지대 해소

전통 산업의 구조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 ① 부동산중개업: 중개업 투명성 강화를 통해 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 ② 감정평가업: 감정평가의 객관성, 투명성,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국민 신뢰도 제고 및 감정 평가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 ③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의 대외 공신력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확충
- ④ 리츠 산업: 리츠 시장의 건전성 관리,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주주가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 ⑤ 분양대행업 및 기타 부동산서비스 업종: 분양대행업은 법제화, 기타 업종은 소비자 보호 강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 ① 소비자 편의 향상을 위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 임대차 재계약 지원
 - 전자계약 시스템 고도화
- ② 전세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 안전한 임대차 계약 지원
 - 전세거래위험정보시스템 구축
 - 대항력 효력 시점 변경
 - 최소보장제, 선지급-후정산
- ③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
 - 시를 활용한 시장 모니터링
 - 소비자 보호 기반 마련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재정경제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06-18 시행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 등에 2,000억 미합중국 달러를 투자하고, 국내기업 주도로 1,500억 미합중국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전략적투자 재원의 구성과 관리·운용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및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등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86호, 2026. 3. 17. 공포, 6. 18. 시행)됨에 따라,

대미투자를 위한 상업적 합리성의 판단 기준,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및 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06-17 시행
-------	-----------------------------------	---------------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저탄소철강 인증,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 및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202호, 2025. 12. 16. 공포, 2026. 6. 17.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시 고려사항 및 선정 절차, 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인증 절차 및 인증 표시방법, 저탄소철강특구 및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공동행위 승인 신청방법 및 승인 절차,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2026-06-16 시행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속인, 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 및 토지 등 출입 근거를 마련하며,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추가하며, 농업진흥구역에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6-12-17 시행 예정

북극항로 활용 및 연관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며,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북극항로사업자에 대한 재정·금융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6-18 시행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수집하여 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및 파기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82호, 2026. 3. 17. 공포, 6. 18. 시행)됨에 따라,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제한 등을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방법으로 정하고, 영상정보의 파기 시 전자적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도록 하며, 기록매체는 파쇄·소각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및 영상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1,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4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7-01 시행 예정

은행의 수익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은행은 기술보증기금 등에 출연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21296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그 밖의 대출의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전액을 각각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재정경제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6.18. ~2026.07.2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20호, 법률 제21715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비촉물자 무상공급 절차 및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비협조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① 비촉물자 무상공급 절차 규정 신설 (제35조의2 신설)

-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15호, 2026. 6. 2. 공포, 2026. 9. 3. 시행)이 비촉물자의 무상공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바, 구체적인 비촉물자 무상공급 절차 등을 규정함

②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비협조 조달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설정 (제44조 및 별표 2 개정)

-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20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시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조달기업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위임하였는바 이에 대한 부과 기준을 별표 2에 마련

※ 문의처 : [재정경제부 조달정책과 \(전화: 044-215-8113, 팩스: 044-215-8113\)](tel:044-215-8113)

산업통상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6.15. ~2026.07.27.
-------	------------------	-----------------------------

「대외무역법」 개정(2026. 4. 21. 법률 제21568호)으로 중소기업·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사항과 국가 안보 위협 등 수출·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①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보완(안 제6조)

② 협정관세 적용 현황 및 활용실태와 관련된 관세청 통계자료 제공 요청범위 규정 (안 제12조의4)

③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 규정 (안 제12조의5~제12조의7)

※ 문의처 :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과 \(전화: 044-203-4018, 팩스: 044-203-4710\)](tel:044-203-401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6.15.
~2026.07.2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26.5.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① 사업화 금융지원지원 대상인 공공연구기관과 기술혁신사업자를 명시하고 기술자산 및 회사채에 해당하는 재산권 범위를 구체화 (제1조의2 신설)
- ② 사업화 금융지원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증기금에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보증수행 내용과 범위, 보증 수수료 및 보증료 산정 시 고려사항을 규정 (제17조의3 신설)
- ③ 유동화자산 최고한도를 중소기업의 경우 300억원, 그 외의 경우 500억원 이내로 규정하고 보증 총액한도를 출연금·지원금·사업화계정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제한 (제17조의6 및 제17조의7 신설)
- ④ 고유식별정보 처리가능 사무에 사업화 금융지원에 관한 사무, 수수료 및 보증료 추가 (제22조 개정)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전화: 044-204-7776, 팩스: 044-204-7789)

국토교통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6.15.
~2026.07.27.

새만금사업의 복합적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성토지 수의계약 대상 및 지역기업 우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① 조성토지 수의계약 대상 확대 (안 제17조제2항제7호 신설)
 - 조성토지 수의계약 대상에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
- ② 지역기업 우대 대상 추가 (안 제34조제1항제3호)
 - 용역계약 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도 전북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전화: 044-201-3693, 팩스: 044-201-5565)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6.17.
~2026.07.27.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법률 제21168호, 2025. 12. 2.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리기관의 지정 범위를 구체화하고, 위임·위탁에 관한 세부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양질의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다른 정보들과의 융복합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을 도입하고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또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인 보안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공간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기준을 완화하며 국가중요시설의 보안처리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공개가 제한되던 공간정보를 이·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전화: 044-201-3460, 팩스: 044-201-5540\)](tel:044-201-346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6.15.
~2026.07.27.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방송광고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방송시장 활성화와 양질의 콘텐츠 제작자원 확충 등을 위하여 방송광고 허용시간 규제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 **방송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등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개선 (안 제59조)**

- 방송광고 허용 시간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규제를 폐지하고, 1일 총량은 1일 방송 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완화하되 주시청시간대의 경우 해당 시간대의 100분의 20 이하로 제한
- 중간광고 허용 방송프로그램의 최소 길이를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 방송프로그램 길이별 허용 중간광고 횟수 확대
- 중간광고 시작 전 자막고지 시 크기 규제 폐지
- 자막광고의 크기 제한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
- 데이터방송채널 광고의 최초화면에서의 자막광고 크기 제한을 최초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

② **가상광고의 허용범위·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 (안 제59조의2)**

- 가상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범위를 어린이, 보도(스포츠 제외)·시사·논평 등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으로 완화
- 가상광고의 크기 제한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

③ **간접광고의 크기 제한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 (안 제59조의3)**

※ 문의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전화: 02-2110-1264, 팩스: 02-2110-0146\)](tel:02-2110-126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2026-06-15 발의

현행법은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을 위해 입법되어, 범죄자가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작권 위반 범죄의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끼치는 경제적 해악이 심각하고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에 의하여 영업이익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수위가 낮아 형량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중대한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2 신설)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2026-06-15 발의

최근 대규모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개인정보 침해나 유출 사고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주체는 정보주체인 국민임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징수된 과징금·가산금·과태료 등은 일반적인 국고 수입으로 귀속될 뿐, 피해 국민의 권리구제나 피해회복 지원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어려운 구조임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정보 노출에 그치지 않음.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생활 침해, 정신적 손해 등 후속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그럼에도 개별 정보주체가 손해 발생 사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특히 개인정보 침해 사건은 대규모·집단적 피해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한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재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피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2차 피해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환류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징수된 과징금·가산금·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2차 피해 예방지원,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4조의3 신설)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2026-06-15 발의

현행법은 지주회사로 하여금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하여금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하여 각각 30% 이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업집단 내 상장법인인 모회사가 자회사를 추가로 상장함에 따라 모회사 지배주주는 신규출자 없이 외부자금을 활용하여 지배력을 유지·확대하는 반면, 모회사의 기업가치는 저하되고 소수주주들의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이라도 그 모회사 또는 자회사 역시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식보유기준을 30% 이상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배제하고 원칙인 50% 이상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중복상장을 억제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안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무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2026-06-15 발의

현행법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행령은 감사보고서의 회사 제출기한을 원칙적으로 정기총회 개최 1주 전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가 정기주주총회 직전에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주주들이 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감사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임. 그럼에도 정기주주총회 직전에 감사보고서가 제공될 경우, 주주는 재무제표 승인, 이사·감사 선임, 배당 등 주요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게 됨. 특히 주주권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안건 자체의 개선뿐 아니라, 주주가 안건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한 시간 전에 제공되어야 함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인이 정기총회일 6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회사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일 6주 전까지 비치·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3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2026-06-15 발의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은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게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한 사업보고서 제출·공시기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가 정기주주총회에 임박하여 제출·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사업보고서는 회사의 사업내용, 재무상태, 임원보수, 지배구조 등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음. 그럼에도 주주들이 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비율 강화,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주주권 보호 장치가 강화된 만큼, 주주총회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정보제공 절차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상법」에 따른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사업보고서를 해당 정기총회일의 6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59조제2항 신설 등)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2026-06-16 발의

최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상장기업의 실적 개선 등으로 국내 증시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 그러나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은 일본, 대만 등 산업구조가 유사한 경쟁국 대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어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PBR은 기업가치 판단의 대표 지표이나, 단순 수치만으로는 기업가치 평가에 한계가 존재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기업의 저평가 원인 및 개선계획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2개연도 이상 계속하여 PBR이 1 미만인 기업에 대해 자본구조와 자금조달비용 등을 스스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 계획을 기재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함 (안 제161조의2 신설 등)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2인)

2026-06-17 발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단순히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PB상품 등을 활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자신의 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청약의 접수·대금의 수령 등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직접 일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통신판매중개자의 역할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소비자들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해당 상품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판매하는 중개 상품인지 아니면 통신판매중개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고,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누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모르는 가운데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명확화함으로써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20조제1항 개정 등)**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2026-06-18 발의

현행법은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전통적인 재무정보 중심의 공시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이하 “ESG”라 한다)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ESG 관련 정보는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저하되어 있고, 기업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되는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 등이 발생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기후변화, 에너지전환, 인구구조 변화, 공급망 리스크, 산업안전 등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는 이미 기업의 장기적 가치평가와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특히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관리, 인권 보호, 이사회 운영 및 내부통제 등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의 중장기 수익성과 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글로벌 투자자와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가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시의 통일성·객관성 및 비교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회사의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2인)

2026-06-19 발의

현행법은 가맹본부에게 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20세기 초 미국의 공정경쟁법 분야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일종인 3배 손해배상(Treble Damage) 제도는 최소한 3배의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해야 고의적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위하적 효과가 있다는 경제학계의 분석 등을 바탕으로 고의 또는 악의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실손해의 3배로 정한 액수를 손해배상액수로 판결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설계되었음. 그러나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를 계수하는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3배 이내”로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에 맡겼는데, 실손해 배상제도에만 익숙해져 있는 법원은 실손해 위주의 일반 손해배상 제도와 거의 유사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7조의2)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1인)

2026-06-19 발의

현행 하도급 거래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납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판로 개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제3자 판매를 장기간 제한하는 불공정한 전속거래 관행이 수급사업자의 자립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하여 원천 금지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자동차 부품산업 등 관련 산업 전반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33조의4제2항제4호 신설)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2026-06-15 발의

최근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의 신설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해산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음

출연자가 해당 특례에 따라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당초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 또는 그 대체재산을 회수하는 경우에도 세 부담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원활한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해당 법인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 그 잔여재산 중 출연재산 및 그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감면받은 경우에는 과다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04조의37 신설)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의원 등 10인)

2026-06-16 발의

정부는 2023년부터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물납 가능 범위가 해당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 이내로 제한돼 있음. 이로 인해 문화유산 등 외에 고액의 상속세가 발생할 경우, 상속인은 나머지 세액을 충당하기 위해 문화유산 등을 해외에 구매하는 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가능 세액의 한도를 ‘해당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과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의 30%’ 중 큰 금액으로 확대하여, 상속인이 보유한 문화유산 등의 가치가 전체 상속세액에 대비해 낮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물납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으로써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73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2026-06-17 발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노인 빈곤, 고독사, 건강 악화 문제는 단순한 사회 문제를 넘어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음. 경로당은 이러한 노인 복지 위기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식사, 건강관리, 여가활동을 책임지는 지역사회 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복지 인프라임

현재 경로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만으로는 급식의 질 향상이나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운영, 특히 스마트 건강관리 기기 도입 등 급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실정임. 특히, 지자체별 재정 격차에 따른 서비스 불균형은 어르신들 사이의 ‘복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복지를 넘어, 지역사회와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어르신 복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함. 경로당은 사익을 추구하는 일반 단체와 달리, 국가가 담당해야 할 노인 돌봄 사무를 현장에서 대행하는 공적 기능의 핵심 거점임. 따라서 경로당에 대한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는 ‘사적 후원’의 성격을 넘어 ‘국가 복지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보아야 함

이에 **내국인이 경로당의 급식 지원, 위생 관리 및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을 목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 복지 예산의 한계를 민간의 동참으로 보완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안 제 76조의2 신설)**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0인)

2026-06-19 발의

최근 이란 전쟁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이 심화됨에 따라 특정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 원유의 안정적인 수급은 국가 핵심 산업의 가동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원유 도입선의 다변화가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중동 산유국을 대체할 수 있는 주요 원유 도입선인 캐나다, 중남미 등에서 생산된 원유는 중동산 원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질(重質)이고 산가(Acid Number)가 높으며 황 등 불순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이를 국내 정유 공장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부식성 재질로의 교체, 탈염 설비 확충 등 대규모의 시설 투자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 그런데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이러한 설비투자는 민간 기업이 온전히 감당하기에 재무적 부담이 크므로 국가 안보 차원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선제적 설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맞춤형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인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2026-06-15 발의

최근 대규모 해킹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통신서비스 이용 안전과 디지털 신뢰가 크게 위협받고 있음. 침해사고는 단순한 시스템 장애나 일시적 서비스 중단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정보 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미싱, 금전적 피해, 사생활 침해 등 후속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정보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한 번의 해킹 사고만으로도 다수 이용자에게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 제도상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최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반복되고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도 반복적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이 신설되는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음. 이는 해킹 사고와 침해사고를 단순한 기술적 사고가 아니라, 이용자 보호와 디지털 안전에 관한 중대한 법적 책임의 문제로 보겠다는 취지임

그러나 침해사고에 대한 제재가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그칠 경우, 실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분쟁조정, 소송지원, 2차 피해 예방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정보통신망법상 제재금이 단순한 국고 수입에 그치지 않고,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의 권리구제와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징수된 과징금·가산금·이행강제금·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명의도용·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후속 피해 예방, 피해 확산 방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의11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2026-06-17 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파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정 당시와 달리, 오늘날은 위치기반서비스는 교통, 배달, 금융, 전자상거래, 통신, 플랫폼 서비스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일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도 단독으로 처리되기보다 성명, 연락처, 단말기 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화되고 있음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의 이동경로, 생활반경, 방문장소 등을 드러낼 수 있는 정보로서 보호 필요성이 큰 정보임. 다만, 대량의 데이터가 결합·연계되어 처리되는 오늘날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는 개인위치정보의 일반적 처리절차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절차와 달리 별도로 규율할 실익이 크지 않음. 오히려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해 각각의 법률에 따라 별도의 동의, 고지, 통지, 파기, 열람·정정·삭제 요구 절차를 두는 것은 수범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법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특히 2020년 2월 4일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 규율을 「개인정보 보호법」 중심으로 통합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일원화하는 방향이 추진되었음. 그러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파기, 정보주체 권리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은 그대로 존치되어 있음. 그 결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낮추고, 사업자의 규제 부담과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이용·제공의 제한, 처리방침 공개, 사업 양도 등의 통지, 파기,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인 제16조,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를 삭제하고자 함** (안 제16조·제17조의2·제18조·제21조·제21조의2·제22조 및 제23조 삭제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최민희의원 등 13인)

2026-06-18 발의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케이블·위성 등 전통적 방송매체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IPTV 사업에 한정하여 별도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시청각미디어콘텐츠공유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존 법체계로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어렵고, 동일한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체계가 달라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저해되며,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통합 법률을 제정**하여 시청각미디어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공적 책임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수평적 규제체제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시청자의 권익 증진과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3인)

2026-06-18 발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사실의 표시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 과정에서 가공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위작, 변작되어 해당 결과물이 사람이 직접 만들어내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정보인 것으로 이용자에게 전달되어 허위 또는 악의적인 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디지털 생태계와 인공지능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고, 그와 관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에 대한 훼손, 위작 또는 변작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를 지원하고 그 훼손, 위작 또는 변작을 방지할 조치 의무를 각각 부여하면서,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안 제43조의2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제4호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2026-06-15 발의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체가 공장을 임차하여 창고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며, 일정 규모의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그 부대시설의 하나로 창고를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산업단지 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체가 주문량 증대로 기존 창고 공간이 부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빈 공장을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물류비 부담 증가 및 유휴 공장부지 발생 등 비효율이 초래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주기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장 등을 추가로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의4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2026-06-19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는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설립 및 협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 소상공인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낮은 거래상 지위로 인해 불리한 거래조건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이 행정기관이나 소상공인 옴부즈만에 대한 의견제시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구성원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해 대기업 등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단체협상권’을 갖도록 하여 소상공인이 겪는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5조의2 신설 등)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2026-06-17 발의

2026년 12월 시행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의약품의 오남용 조장 행위 금지, 특정 의료기관·약국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금지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중개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직접 의약품의 판매 또는 판촉영업에 나서거나,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한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의약품의 유통·거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처럼 특정 제약사나 도매상과 결탁하여 특정 의약품의 소비를 유도할 경우, 이는 의료인의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왜곡하고 보건의료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큼

이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의9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의원 등 10인)

2026-06-15 발의

현행법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의 하나로 수소환원제철 실증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발표한 바 있으나, 수소환원제철은 막대한 전기 사용량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해당 철강산업에 대한 전기료 감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로서 수소를 이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기술을 사용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4항 및 제51조제2항 제4호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2026-06-15 발의

현행법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소특화단지는 지정 이후에도 산업환경의 변화, 수소경제 관련 정책의 변경, 기반시설 구축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정 당시의 면적·위치·사업시행기간·시행방법 등 지정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정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지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소특화단지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2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2026-06-16 발의

현행법령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최대 1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반해 공무원은 근속 기간과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육아휴직 기간도 3년(급여 지급 기간 최대 1년 6개월)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해고뿐 아니라 인사과과에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등의 규정이 있어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등의 신청 대상을 계속근로기간 6개월에서 3개월 이상인 근로자로 완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용보험법」을 함께 개정하여 급여지급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하고자 함. 또한, 육아휴직 등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형태를 인사고과 등에 관한 규정 등까지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 (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8인)

2026-06-16 발의

현행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통합허가 제도는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대기, 수질 등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에는 사업장의 환경영향이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에만 그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폐기물 발생, 용수 사용 등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주로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저감에 중심을 두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 변화된 환경관리 과제를 통합허가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오염물질 저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시설 개선,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 저감, 용수 사용 절감 등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환경 영향을 함께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조 및 제9조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2026-06-16 발의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개선하여 기후위기, 인구·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물 수급 여건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고, 수도사업자의 수도 설치비용 부담의 범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수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도공사에 대한 허가 절차와 굴착공사 전 수도시설의 매설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 협의절차를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를 법령에 명시하여 부적격 사업자를 사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2026-06-17 발의

현행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는 해당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주체가 사용자임에 따라 객관적인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사용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지체 없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사용자에게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에 개입 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6조의2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2026-06-17 발의

최근 가동한 지 20년 이상 된 풍력발전기의 붕괴, 화재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잦은 고장과 높은 유지보수 비용으로 가동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3년 주기의 정기검사 외에 풍력발전 설비의 노후화와 관련된 별도의 안전검사나 철거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임

한편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최근 실시한 풍력발전기 특별 안전점검 결과, 점검 대상 발전기 114기 중 26기가 중대한 결함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설계수명 20년을 초과한 풍력발전기는 향후 5년 동안 80기에서 208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풍력발전기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용 전기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풍력 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2 및 제20조제1호의2 신설 등)

성평등가족위원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2026-06-16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 표시·광고, 차별·편견을 조장하거나 인신매매, 인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서 결혼중개 광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제결혼 상대방 여성의 얼굴, 키, 몸무게 등 프로필을 노출시켜 성을 상품화하거나 국가·인종 등에 대한 차별·편견을 조장하는 광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가 SNS 등을 통하여 은밀히 영업하면서 국제결혼중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또한, 국제결혼에 대한 지식·경험이 부족한 중개 서비스 이용자들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 계약서에 없는 추가비용 요구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중개업체에서 국제결혼 상대방의 결혼이민에 필요한 사증 발급 기준·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여 이용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 중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결혼 상대방이 사증 발급을 거부당하여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사례도 있음

이에 **결혼중개 거짓·과장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혼중개업자의 중개계약 체결 관련 준수 의무, 결혼중개업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중개업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결혼중개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	6/23(화) 10:00	- 청문회 실시의 건 등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	6/25(목) 10:00	-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6/26(금) 10:00	-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6/22(월) 14:00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서영석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6/23(화) 09:30	65세 법정 정년연장 쟁점과 입법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	박해철·박홍배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6/23(화) 10:00	국내 음료용기 재사용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강득구·이학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
	6/23(화) 10:00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자산과 세 정상화 토론회 1	윤종오·차규근 의원실 등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6/23(화) 14:00	신산림국부론: 숲에서 찾는 K-포레스트 퀀텀 점프 전략 토론회	김종민·어기구 의원실 등	의원회관 1간담회의실
	6/24(수) 14:00	캐릭터산업 진흥법 제정 공청회	김승수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6/26(금) 14:00	중독 회복 연대 중독 회복 포럼	아해민·김선민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자료집 등	6/23(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11호(통권 제299호) 발간	국회도서관	
	6/24(수)	「금주의 서평」 제2026-24호(통권 제783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3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6/8(월)	「Data+」 제2026-9호(통권 제33호)	국회도서관	
	6/10(수)	「금주의 서평」 제2026-23호(통권 제782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6/16(화)	건설/부동산	도시정비사업 뉴스레터 6월호
6/19(금)	조세	Tax Intelligence 6월호
6/19(금)	공정거래	공정위, 신고인 절차적 권리 강화 -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내용 및 시사점
6/19(금)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6. 3. - 2026. 6. 16.)
6/19(금)	방송통신(TMT)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 분리 보관·관리 조치 시행 시기 단축에 따른 유의사항 -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남형기 | 고문

프로필보기



김건훈 | 수석전문위원

프로필보기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이승상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